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희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희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 (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나. 약칭의 위치 조정 (안 제35조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철도시설의 사용허가)”를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등)”
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로 신설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등
“이라 한다)”를 “선로등”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철도시설의 <u>사용허가</u>)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의 기준·절차·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철도시설의 <u>사용허가 등</u>) ①----- -----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① (생략)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이	② 선로등에 ----- ----- ----- -----

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	-----
은 당해 선로등을 여객 또는	-----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
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	-----
우 그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	-----
할 수 없다.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연 락 처	(044) 201 - 3975